

[別表]

船舶管理法施行令 第18條第2項에 依한 樣式

(表)

第 號 年 月 日交付	
船舶管理法施行令 第18條의 規定에 依한 職務의 執行에 關한 證票	
交通部長官 <table border="1"><tr><td>姓名 印</td></tr></table>	姓名 印
姓名 印	

(裏)

船舶管理法施行令抄
第18條 交通部長官은 必要하다고 認 定할때에는 當該公務員으로하여금 船舶또는 必要한 場所에 臨檢하여 帳簿, 書類其他物件을 調査하게 할 수 있다.
第19條 前條의 規定에 의한 公務員 의 臨檢 또는 調査를 拒否, 妨害하 거나 忌避하는 자는 3個月以下の 懲役 또는 5萬환以下の 罰金에 處 한다.

從 9리
橫 6리
厚 紙
白 色